의안번호	제 471 호
의 결	2016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9월 26일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1

발의연월일 : 2016년 9월 26일

발 의 자 : 김영주, 이광희, 이양섭,

박우양, 박종규, 윤은희

황규철

1. 개정이유

○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개선을 통해 실질적 민·관 거버넌 스의 강화를 도모하고,

O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변경 및 약칭표기 개정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 - (현행) 주민 → (개정) 도민
 - 제1조 목적조문에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옮김
- 나. 교육감의 책무 및 홍보·교육 활동 조항 삭제
 - (현행) 제5조, 제10조제4항
- 다. 위원회 구성 확대 (안 제6조)
 - 위원수 : (현행) 10명 이내 → (개정) 15명 이내
 - 위원장 : (현행)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 → (개정) 행정부지사
 -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확대 (추가)
 - 당연직 : 여성정책관
 - 위촉직 :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 추천 각 1명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- 45 호

라. 협 의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협의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충청북도(이하 "도"라고 한다)"를 "충청북도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도"를 "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 중 "주민"을 "도민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"주민"을 각각 "도민"으로, 같은 항 제2항 중 "취 해야"를 "취해야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주민"을 "도민"으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,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6조)의 제목 "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)"을 "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·시행)"으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7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
- 제6조(종전의 제7조)제2항 중 "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"을 "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"으로, "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이"를 "행정부지사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.
 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- 제6조(종전의 제7조)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
 - 2. 자살예방 전문 조사 ·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
 - 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
- 제6조(종전의 제7조)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 - 4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 - 5.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
 - 6.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
- 제6조(종전의 제7조)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제6조(종전의 제7조)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7조(종전의 제8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살예방센터"를 "자살예방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인정하는"을

- "필요하다고 인정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도지사 및 시장· 군수"를 "도지사"로, "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"를 "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제13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전문성, 인력,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종전의 제8조)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종전의 제9조)에 제1항 중 "주민"을 "도민"으로 한다.

제9조(종전의 제10조)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12조)제1항 중 "범위안에서"를 "범위에서"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3조) 중 "알게된"을 "알게 된"으로, "아니된다"를 "아니 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(이하 "도"라고 한다) 차 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
제2조(기본정책)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도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.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,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충북도민(이하 "주민"이라 한다)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수립하여야 한다.	제2조(기본정책) ①
제3조(도민의 권리와 의무) ① <u>주민</u>	제3조(도민의 권리와 의무) ① <u>도민</u> -

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,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 ② 주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,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	
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<u>취 해</u> <u>야</u> 한다.	<u>취해야</u>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주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
제5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	<u>〈삭 제〉</u>
제6조 <u>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)</u> ① · ② (생 략)	제5조 <u>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·시</u> <u>행)</u>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제7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 제6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 정책에 필요한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 의 ·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· 운 영 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
 - 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 원장은 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, 위원 중 교육청 관련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.
 - 1. 자살예방 전문 조사 연구기 관 및 단체의 장
 - 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 한 학자 및 전문가 등
 - 3.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-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·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 한다.
- ② ------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--------- 행정부지사가 -----
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- 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여성 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2. 자살예방 전문 조사 ·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
- 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
- 4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- 5.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 명
- 6.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 장이 추천하는 각 1명

- ④·⑤ (생 략)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

 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

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 (생략)

〈신 설〉
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⑦ (현행과 같음)
-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<u>자살예방센터</u>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<u>인정하는</u>업무
 - ② <u>도지사 및 시장·군수</u>는 제1 항에 따른 <u>자살예방센터를 정신</u> <u>보건법 제13조의2</u>에 따른 정신보 건센터에 둘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 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

- 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도 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----
 - --- <u>자살예방센터(이하 "센터"라</u> 한다)--.
 - 1. ~ 5. (현행과 같음)
 - 6. -----
 - -----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
 - ② 도지사-----
 - ----- <u>센터를 「정신보</u> 건법」제13조-----
 - -----.
 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전문성, 인력,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 수행 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

<u>〈신 설〉</u>	서 보조할 수 있다. ④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 탁조례」를 따른다.
제9조 (자살통계 분석 등) ① 도지 사는 <u>주민</u>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 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.	제8조 (자살통계 분석 등) ① <u>도민</u>
제10조(홍보·교육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<u>제9조(홍보</u> ·교육 등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<u>〈삭 제〉</u>
제11조 (생략)	<u>제10조</u> (현행 제11조와 같음)
제12조(민간단체 지원)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 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	제11조(민간단체 지원) ①

제13조(비밀누설 금지) 이 조례에	<u>제12조</u> (비밀누설 금지)
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	
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	
직무수행과 관련하여 <u>알게된</u> 타	알게 된 -
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<u>아니된다</u> .	<u>아니 된다</u> .
제14조 (생략)	<u>제13조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방자살예방센터(이하 "자살예방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자살 관련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- 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- 6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 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6.5.29.〉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정신보건법

- 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 ①, ② (생략)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 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·공립정신의료 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3조의2(정신보건센터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·군·구 단위로 정신질환 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